

안산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폐지 안

의안 번호	803
----------	-----

제출년월일 : 1999. 8.
제출자 : 안산시장

□ 폐지이유

- 안산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1986. 1. 1일자로 제정되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 '95. 5. 22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농지개량사업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되어 있어 자치법규 정비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별첨

□ 기타 참고 자료

- 농어촌정비법 부칙 제7조 : 별첨
- 기존의 조례 : 별첨

안산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

안산시 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면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안산시조례 제80호]
1986.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개, 배수시설, 농업용 도로 기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농지의 교환분합과 구획정리
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분합
4. 기타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위원회) 농지개량 사업시행에 따른 중요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4조(심의대상)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심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농지개량사업 시행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환경계획을 포함)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지개량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 인원에 관한 사항
4. 농지평정가격 및 등급시정에 관한 사항
5. 일사이용지(가환지)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사업비(보조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7. 경비부과(노역현물을 포함) 징수에 관한 사항
8.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10. 사업비 이양에 관한 사항

제5조(경비의 부과) ①이 사업 실시에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안산시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적용한다.

제3편 경제봉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②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체이자 사무비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 총액에서 시에서 부담한 금액을 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경비부과 기준은 농지등급 면적의 비에 의하여 부과한다.

④경비는 시장이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의 예에 의한다.

제6조(환지의 교부방법) ①환지를 교부할 때에는 지목, 지적 및 등급, 토성수리, 경사, 온도 기타 자연조건 및 이용조건을 참작하여 종전의 토지와 상용하여야 하며 그 위치는 종전의 토지를 위주로 하여 소유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에 집단환지를 하여야 한다.

②종전의 토지소유 면적이 991.7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제7조(환지의 청산) 환지의 교부 및 이에 관한 청산은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공사로 완료된 뒤에 이를 시행한다.

제8조(청산방법) 환지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를 종전토지 평정가격에 곱한 금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제9조(보상금과 구상금) ①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보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고 토지의 소유자에게 이의 구상을 하여야 한다.

②농지개량사업 시설중 도로 구거 기타 공작물의 부지로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를 추산하여 보상한다.

제10조(일시이용토지의 지정) ①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전(고시전)에 있어서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한 토지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②종전의 지역에 의하여 그 소유자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에 상당한 사용수익의 구역을 일시 이용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보상금의 징수 및 교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의 수익이 종전농지의 수익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제3면 경제통상 제4장 농어촌진흥 안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차임의 차액을 추산하여 보상금을 정수 또는 교부한다.

제12조(농지소유자의 신고의무) 법 제5조의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에 발생한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농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재지 및 건평)을 지구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 개간 또는 분할, 합병이 있을 때
 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때
 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5조제2항 각호에 의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때
 5.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8. 가옥 기타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 제13조(토지의 가격평정) ① 종전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착수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 후에 자체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131조 및 제13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정가격을 조사 평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